의 반호

1403

[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10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1. 16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2. 1.(금)

2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개정사항 및 일본식 한자 순화를 반영한 1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

- 1) 행정자치부 ⇒ 행정안전부
- 2) 국토해양부 ⇒ 국토교통부
- 3) 중소기업청 ⇒ 중소벤처기업부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- 1) 납골당 ⇒ 봉안당, 지참 ⇒ 지각, 사리도 ⇒ 자갈길
- 4. 근거법규: 「정부조직법」제26조

5. 검토의견

- O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사항 반영 및 법 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,
- O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등 13건의 조례안을 일 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일괄개정 조례 목록

구 분	조 례 명	소관부서	비고
제 1 조	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	기획예산실	p5
제 2 조	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	и	p6
제 3 조	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	문화관광실	p6
제 4 조	울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	총 무 과	р7
제 5 조	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	ш	р7
제 6 조	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	"	р7
제 7 조	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	"	p8
제 8 조	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	경제일자리과	р9
제 9 조	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	66	p10
제10조	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	건 설 과	p10
제11조	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	ш	p11
제12조	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・복구에 관한 조례	안전총괄과	p12
제13조	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·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	의회사무국	p13